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9. 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5월 19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년 5월 23일

다. 상정일자 : 1) 제2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94. 6. 15 심사결과 : 보류)
2) 제2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4.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기하여 적극적인 변상금 징수로 무단점유 국, 공유재산의 시효중단 조치는 물론 세입증대를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대현)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호 규정중 『도로하천』을 『국공유지』로 개정하므로써 현행 도로하천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업무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무단점유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및 계약체결 관련업무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

제출년월일 : '94. 5.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 정 이 유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부과징수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기하여 적극적인 변상금징수로 무단점유 국, 공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는 물론 세입증대를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함.

3. 참 고 사 항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3호
○ 관련지침 : 재산45511-511(94. 2. 23)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추구
○ 신, 구조문 대비표(별첨)

4. 예 산 조 치

○ 시경상보조금으로 충당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도로, 하천”을 “국, 공유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생략) 3.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생략) 5. (생략)	제3조(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 공유지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